

(붙임 2)

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2024. 3. 21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“세칙”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“절차”)에 따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경남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, 확인서 등)
5. 기타 경남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대출취급실적 및 소명자료, 사후심사 자료 등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규정 준수 여부(20%)
5. 제도 운영관련 협조도(10%)

제5조(기타 사항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<2019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5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6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0.8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11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1.2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1.11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2. 1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28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2.3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2. 10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3.1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 <2023. 3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3.6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 <2023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4. 3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¹⁾³⁾

지원 대상코드	지원 대상	지원 부문	선 정 기 준
A1	창업기업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(KSIC 업종코드 10~34)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*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.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* 지원대상 서비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보통신업(KSIC 업종코드 58~63) ②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KSIC 업종코드 70~73)
A2	벤처기업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상의 벤처기업
A3	혁신기업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기업 -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참여기업 - 해당업체의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특허 보유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보유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으로서 제조업(KSIC 업종코드 10~34), 건설업(KSIC 업종코드 41~42) 영위기업
A4	녹색기업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제조업체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성적표지(EDP)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 재활용품 품질인증)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-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"우수 Green-Biz" 선정기업
A5	연구개발 우수기업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비*가 매출액의 2%(서비스업**은 0.5%)를 초과하는 기업 *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+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+ 개발비 상각비 +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**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, G~N, P~S업종
A6	추천기업 ²⁾	일반 지원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' 수상 기업 - 경상남도 선정 '고용우수기업'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및 「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- 경상남도 선정 「경남 하이(Hi)트랙」 협약기업 - 「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」 지정 보육기업

지원 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
A7	지역특화 산업 영위기업	전략 지원 부문	- <별첨1>의 도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
A8	지역전략 산업 영위기업	전략 지원 부문	- <별첨2>의 도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- 경상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 소재 스마트 공장구축 기업 - 경상남도 선정 '지역혁신 선도기업'
A9	전입기업	일반 지원 부문	- 타 지역으로부터 경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 (KSIC 업종코드 10~34) 영위기업
A10	수출관련 기업	일반 지원 부문	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일반 지원 부문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전략 지원 부문	- 경상남도 소재 농업, 임업, 어업(KSIC 업종코드 01~03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* *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(순수개인 제외) 및 농어업법인 포함
A14	명절·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⁴⁾	일반 지원 부문	- 재해(수해, 화재, 지진 등),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중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본부장이 인정한 기업 - 설, 추석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
A15	기타 지원기업 ⁴⁾	일반 지원 부문	- 기타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	특별 지원 부문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(< >내는 KSIC 업종코드) ① 숙박·음식점업(55~56), 다만, 주점업(5621)은 제외 ② 도소매업(45~47) ③ 여행사·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(752) ④ 운수·창고업(49~52) ⑤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(90~91), 다만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

주 : 1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
2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3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4) 경남본부장은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<별첨1>

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해당업종

산업명	KSIC 코드	항목명
스마트기계산업	26429	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
	27211	레이더,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
	28111	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
	28119	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
	29162	승강기 제조업
	29169	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
	29199	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
	29229	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
	29230	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
	29271	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
	29280	산업용 로봇 제조업
	29299	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
	30331	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
첨단항공산업	22241	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	23995	탄소섬유 제조업
	26224	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
	31311	유인 항공기,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
	31312	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
	31321	항공기용 엔진 제조업
	31322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
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나노융합스마트 부품산업	20129	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
	20131	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
	20202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	204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	22292	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
	24191	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
	24329	기타 비철금속 주조업
	26129	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
	26299	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
항노화메디컬산업	10211	수산동물 훈제,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
	10749	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
	10792	차류 가공업
	107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
	20423	화장품 제조업
	21300	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
	27112	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
	27192	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
	27199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

<별첨2>

경상남도 지역혁신전략산업 해당업종

산업명	KSIC 코드	항목명
친환경스마트조선산업	29111	내연기관 제조업
	29119	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
	31111	강선 건조업
	31113	기타 선박 건조업
	31114	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
첨단항공우주산업	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23121	1차 유리제품,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
	25112	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
	28909	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
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	28202	축전지 제조업
	30310	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
	30320	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
	30391	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
	30392	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
	31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
그린에너지산업	23222	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
	28112	변압기 제조업
	28114	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
	29132	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
	29133	탭,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
지능형의료부품 바이오헬스산업	21101	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
	21220	한약약품 제조업
	28519	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
	29174	기체 여과기 제조업

산업명	KSIC 코드	항목명
부품소재산업	24113	합금철 제조업
	24119	기타 제철 및 제강업
	24132	강관 제조업
	25923	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
	29294	주형 및 금형 제조업
지능형기계산업	27216	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
	29141	구름베어링 제조업
	29142	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
	29241	건설 및 채업용 기계·장비 제조업
	72129	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나노융합소재부품산업	20111	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
	26291	전자축전기 제조업
	26295	전자감지장치 제조업
	28902	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
	29172	공기 조화장치 제조업
	30399	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지능형로봇산업	25113	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
	26112	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
	26410	유선 통신장비 제조업
	29272	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
	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ICT융합산업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	62021	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	63111	자료 처리업
	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
<별표2>

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²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
	65 보험 및 연금업
	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
	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
	96122 마사지업
	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- 주 : 1) 업종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업종군의 통칭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상 코드를 지정하여 배정 가부를 판단함. 이 때 배정 제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, 소분류, 세분류로 지정될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 제외업종에 해당됨
- 2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